

의안번호	제 382 호
의결 연월일	2016. . . (제 회)

**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**

발의자	장선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4 월 18 일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장선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4월 18일

발의자 : 장선배, 박봉순, 박종규
박한범, 임병운, 최병윤
이숙애

1. 개정이유

-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개정('15. 2. 3)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여성정책관에서 행정부지사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며,
-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위원 중 기존 '소관 상임위원회 위원'을 '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'로 개정함.
- 그 밖에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, 문구수정 및 불필요한 항을 삭제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변경을 통한 위원회 위상 제고 (안 제10조 제1, 2항)

- 위원장 : 여성정책관 → 행정부지사

- 당연직 위원 : 예산담당관 등 → 기획관리실장

나.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개정 (안 제10조 제3항)

3. 개정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라. 협의 : 여성정책관 협의

마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강구하여야” 를 “마련하여야” 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7조 중 “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” 를 “반영하여야” 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분석평가책임관이” 를 “행정부지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정책관, 예산담당관, 법무통계담당관, 성별영향평가센터장, 충청북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1명” 을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” 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

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<u>강구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마련하</u> <u>여야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분석평가 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5조(분석평가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7조(분석평가결과의 반영)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<u>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7조(분석평가결과의 반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반영하</u> <u>여</u> -----.</p>
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분석평가책임관이</u>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행정부지사가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<u>여성정책관, 예산담당관, 법무통계담당관, 성별영향평가센터장, 충청북도회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1명</u>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④, ⑤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 <p><u>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③ ----- <u>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충청북도회의에서 추천하는 자</u></p> <p>④,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<p>제14조(분석평가 정보의 수집·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④ 제1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유형 및 육성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4조(분석평가 정보의 수집·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

제7조(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)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·심의회·협의회 등(이하 “위원회등”이라 한다)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1.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
2. 본인,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
[의원님 참고자료]

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관련 타 시도 조례 현황

-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나 부자치단체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
-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강화 측면에서 위원장은 최소한 부자치단체장이 맡는 것이 타당함.
- 당연직 위원도 담당 과장급보다 총괄 성격의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토록 하고,
- 도의원은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7조 및 「충청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해당상임위가 아닌 의원 중 위촉되는 것이 현행 법령에 부합(符合)함.

시·도	근거	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			
		위원장	실국장(당연직)	시·도의원(당연직)	시·도의원(위촉직)
서울특별시	성평등기본조례(성평등위원회)	<u>시장</u>	<u>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급 이상 공무원</u> , 기획·경제·복지 등 업무 담당 국장급 이상 공무원	-	-
부산광역시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양성평등기본조례(양성평등위원회)	<u>행정부시장</u>	<u>기획관리실장</u> 기획행정관, 여성가족국장	-	-
대구광역시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(성별위원회)	위원 중 호선	여성가족정책관	-	○
인천광역시	여성발전 기본 조례(여성발전위원회)	<u>행정부시장</u>	<u>여성가족국장</u>	-	-
광주광역시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(성별위원회)	<u>행정부시장</u>	<u>정책기획관</u> , 행정지원과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산담당관, 법무담당관	-	○
대전광역시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(성별위원회)	<u>정무부시장</u>	<u>기획조정실장, 자치행정국장</u> 보건복지여성국장	-	○
울산광역시	양성평등기본조례(성별위원회)	위원 중 호선	<u>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</u>	-	-
세종특별자치시	-	-	-	-	-

경기도	성평등기본조례 (성평등위원회)	도지사	기획, 예산, 인사, 경제, 문화, 도시,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	-	○
강원도	양성평등기본조례 (양성평등위원회)	위촉직 중 호선	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국장 기획, 경제, 복지 등 업무담당 국장급 이상 7명 이내	-	○
충청북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분석평가책임관	여성정책관,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, 성별센터장 소관 상임위 의원	○	-
충청남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위원 중 호선	여성가족정책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	-	○
전라북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행정부지사	4급이상 관계 공무원 (위촉직)	-	○
전라남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양성평등기본조례 (양성평등위원회)	행정부지사	기획조정실장(당연) 여성가족정책관(위촉)	-	-
경상북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양성평등기본조례 (양성평등위원회)	행정부지사	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관	-	-
경상남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위원 중 호선	분석평가책임관 성별센터장, 예산담당관	-	○
제주특별자치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위원 중 호선	분석평가책임관 예산담당관	-	○